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교육부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교육부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교육부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일러두기

1. 이 가이드는 교육부가 2022년 발간한 『유학생을 위한 가이드북』 개정판입니다. 새롭게 제·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였고,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유형에 따른 대처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이 가이드는 유학생들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 생활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가이드 내용 자문에 다음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Monlomjamts Khulan | 계명대학교 대학원생
- Oji Ekenna Ezinna Nwanyioji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 Chi Huien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 장 다 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 지 나 | 연세대학교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

안녕하세요? 유학생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sexuality)과 관련된 문제는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혼자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는 여러분이 한국 사회와 대학 캠퍼스에서 맞닥뜨릴지 모를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성희롱·성폭력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및 대학 규정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라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여러분!

항해 도중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험난한 폭풍우를 만난다면
이 가이드가 나침반이 되어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이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도전과 안전한 유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목 차

CONTENTS

I. 대한민국에서 성희롱·성폭력이란?

II. 문제 상황별 대처방법

01. 캠퍼스생활과 안전
02. 모임 등 친교생활과 안전
03. 교제폭력
04. 디지털성폭력
05. 스토킹

III. 주변인의 역할 :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되었다면?

IV. 도움 요청하기

[부록]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정보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CHAPTER

I

대한민국에서 성희롱·성폭력이란?

I 대한민국에서 성희롱·성폭력이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해서는 그 사회의 법적·문화적 기준을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신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및 허용 기준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만, 성희롱의 성립은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지녔느냐'가 아닌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수치심을 느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엄중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성희롱·성폭력을 개인 간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근함의 표시이다." 혹은 "농담이었다."라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언동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희롱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싫어하는지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 불편함입니다.

1 성희롱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 유형에는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해당합니다.

성희롱 유형

성희롱 유형	상세 내용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모든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 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매체(SNS 등) 포함 •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성적 사생활을 묻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성적 함의가 담긴 콘텐츠(사진, 영상, 글 등)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여주는 행위 ※ SNS와 같이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여도 성립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적절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기타 성희롱	• 그밖에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성희롱 판단기준

1.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기준
2.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는 남성, 여성 모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
3.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소극적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도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
4. 일회적인 성적 언동,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성희롱 성립

Q&A

Q 대학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모두 처벌할 수 있나요?

A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들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희롱은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그 행위가 일어난 특정 상황과 맥락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희롱 중 신체적인 접촉이 동반되는 경우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성희롱 행위라도 대학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대학 자체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비슷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성희롱 신고는 각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실명,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가 보장됩니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언동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학 내에서는 인권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 신고나 전문기관 연계 등 사건처리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유형

성폭력 유형	상세 내용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간 또는 추행하는 행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 무의식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또는 신체에 대해 성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업무상 위력 등 간음/추행	•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물리력,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신체에 대해 성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행위

※ 법률상 강간·간음의 행태는 성기, 항문, 구강 등에 성기,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임

Q&A

Q 성폭력 피해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 미성년자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의 법적·사회적 연령기준은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생일이 지나야 1살씩 더하는 국제통용 기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입학한 1학년 학생(만 19세)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새롭게 법적 미성년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9세 이하 미성년자라면, 대학은 성폭력 및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 나이 19세 이하 피해자라면 상대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가해자의 나이나 지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오해하기 쉬운 사례와 실제 기준

대한민국의 대학은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情)'에 기반한 유대감이 깊고, 술자리 문화가 활발한 편입니다. 하지만 친구나 동료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친근함의 표시로 무심코 했던 행동이 대한민국의 법적·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는 '나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한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1 신체적 접촉 : 어깨를 두드림·팔짱 끼기, 술자리 부축 상황 등

대한민국 문화는 개인의 신체적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동의 없는 접촉에 매우 엄격합니다.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친해지고 싶어 팔짱을 끼는 것, 술취한 동료를 돕기 위해 부축하는 것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2 언어적 표현 : 외모 평가·성적 칭찬 등

농담이나 칭찬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언어적 성희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섹시해 보인다.", "몸매가 좋다."같은 말은 상대방이 칭찬이 아닌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3 동의(consent)에 대한 오해 : 침묵 = YES?

침묵이 곧 'YES'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동의'가 없다면 거절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웃고 있거나 명확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행동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선후배 관계나 교수-학생 관계처럼 권력 차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워 침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만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례 4 디지털 문화 : 불법 촬영 및 성적 이미지 전송

강의실이나 축제 현장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거나 단체채팅방에 동료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밤늦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성적인 농담이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오해 vs 실제

오 해	실 제
가벼운 포옹은 인사다.	상대가 원치 않는 포옹은 성추행이다.
술기운에 한 실수이니 이해해 줄 것이다.	술은 감경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
친한 사이니 이 정도 농담은 괜찮다.	친밀도와 상관없이 성적 불쾌감은 범죄가 된다.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CHAPTER

II

문제 상황별 대처방법

II 문제 상황별 대처방법

01 캠퍼스생활과 안전

1 대학생활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대학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며 각각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은 학생-학생, 학생-조교, 학생-교수, 학생-교직원, 교수-교수, 교직원-교직원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마다 자체 규정을 마련해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분(교수나 직원, 학생)이나 국적(한국이나 다양한 출신국)에 상관없이 해당 대학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비록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는지 몰랐다거나, 친한 관계에서 '장난'으로 한 행위일 뿐 성희롱·성폭력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학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유학생'이라는 특수성과 '출신국'의 문화적 차이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또한 혹여 피해를 입더라도 대한민국 법률과 지원체계 안에서 최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2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또는 수업과 관련해 선후배나 동료 학생, 조교, 교수, 교직원 중 일부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다고 위협하거나 속여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 교수(조교, 교직원) ▶▶ 피해자 학생

사례 1 학교 수업

수업 중 수업 내용 이해를 목적으로, 또는 수업과 관계없는 성적 발언을 다수의 학생 앞에서 하거나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유도하는 경우, 지도를 빌미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너는 성형(가슴) 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남자친구가 생긴다."
(실기수업 중에) "허벅지를 주물러 달라.", "뒤에서 안아봐라."
"OOO은 야하게 옷을 입었네. 밤일 나가냐?"
"이성과 교제하는 이유가 잠자리 때문이 아닌가?"
"이성에게 유혹을 받은 적 있나? 어떤 식으로 받았나?"
"너희 나라 애들은 이런 야한 거 좋아하지 않아?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던데?"

사례 2 학생 지도, 면담

불필요하게 사적 연락을 취하는 경우 또는 취업·진로·장학금·상담·수업·연구 등 학업을 빌미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집에 돌아온 지금도 네 생각이 난다.", "너와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했다."
"나하고 데이트하면 내 과목에서 A를 주고, 추천서도 써 줄게."
"함께 바다 보러 가자.", "모텔에 가본 적 있어?", "손잡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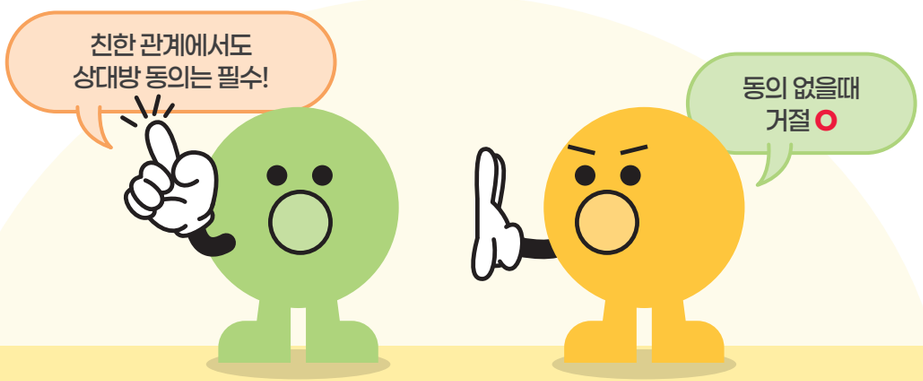

행위자 학생 ▶▶ 피해자 학생

사례 3 학교생활(공동체 활동)

학과의 단체 대화방이나 조별 과제를 위한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

"덮치고 싶다."
"OOO은 △△△이랑 (진도를) 어디까지 갔나?"
"OOO 몸매가 가장 좋더라, 얼굴은 □□□가 제일 예쁘지."

성적인 메시지나 영상물, 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보도록 하는 경우

(야한 사진·영상 전송하며) "이거 대박이지? 너랑 닮았더라"

Q&A

Q 친구 사이에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아무리 친한 관계에서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리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학업상 가해자와의 분리나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대학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정황 증거(예: CCTV 영상, 증인, 녹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제3자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폭력(예: 강간,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112)에 신고하여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고 적시에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후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통역도 지원됩니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학 내 인권센터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반드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한 뒤에라도 학교의 보호를 받고 싶거나 학교에서 가해자에게 별도로 제재하기를 원한다면 대학 내 인권센터에 추가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모임 등 친교생활과 안전

1 모임 등 친교관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대학에서는 수업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친목 모임, 조별 과제를 위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친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거나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합니다. 좀 더 친해지면 서로의 집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나 모임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학 밖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가게 되면 낯선 사람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사람들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업무 관계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에서든지 친한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성희롱·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 대한 성적인 언행은 편견에 근거한 잘못된 행동이며 '한국의 문화'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친한 관계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한국문화에서는 친밀한 관계일 때 허용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국적이나 문화, 성별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접촉할 때는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어적 동의 여부를 반드시 먼저 살피도록 합니다.

2 만남이나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

스터디 모임, 동아리 활동, 학과 모임, 신입생환영회 등 단체 모임

공공장소에서 무리 지어 타인에 대한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문제가 됩니다. 젊은 청춘들의 만남인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리하게 사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역시 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뒤풀이나 회식 자리에 참여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술게임을 하는 것을 한국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거나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술게임을 하더라도, 과음을 유도하고 성적 내용이나 혐오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 잘못된 술게임은 함께 바꿔나가야 합니다.

사 례 | **단체모임에서의 성적 농담이나 행동**

- 모임이나 만남에서 'OO사람들(특정 국가나 인종)은 데이트(혹은 하룻밤)를 제안하면 다 넘어온다.', 'OO사람들(특정 국가나 인종)은 성적으로 개방적이다.' 등과 같은 발언이나 표현으로 성적 대상화 하는 경우
-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며, 술자리에서 게임 중 무리한 벌칙(강제 입맞춤, 데이트 요청 등)을 강요하는 경우
- 옆자리의 타인에게 무리하게 합석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 술자리에서 남자, 여자가 섞어 앉아야 한다며 이성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경우
- "OOO랑 △△△은 참 잘 어울린다.", "잘해봐라, 알고 보니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러브샷을 해봐라.", "붙어 앉아라."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치 않는 상대와 커플로 만들며 스킨십을 강요하는 경우
-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춘다며 강제로 끌어안거나 옆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내 집 또는 친구 집으로 일대일 또는 일대다수로 방문하는 경우

원치 않는 상대가 내 집에 놀러 오겠다며 계속해서 초대를 강요하거나, 초대하지 않은 상대가 갑자기 놀러 오려고 하는 경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공간과 다른 사람의 공간은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 례 |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적 접근**

- 본인의 집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모여 과제나 모임을 하는 것처럼 속여 집으로 불러들인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 술자리 모임 끝에 집으로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거나 자고 가겠다며 막무가내로 들이닥쳐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Q&A

Q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대방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하는 것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너무 취해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사람은 성적 접촉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를 악용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인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었다면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그날 내가 너무 취했어."라거나 "내가 자제했어야 했는데."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112), '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로 연계하여 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되더라도 향후 대처를 위해서는 우선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증거수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긴급전화 1366'을 통해 통역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3 교제폭력

1 연인 관계에서의 교제폭력

연인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교제폭력(Intimated Partner Violence)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넓게는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나 호감이 있는 상태(썸타는 관계), 이별통보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가 끝난 후까지 이어지는 폭력 역시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상대방의 통제를 연인 간 애정 표현의 방식으로 넘겨서는 안 되며. 사랑을 빙자한 폭력 행위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교제폭력 유형과 사례

교제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심리·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개는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만큼 해결 과정이 힘들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통제와 폭력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책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강압적 통제

-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 외모,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자신의 방식에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사 례

-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내 스케쥴을 모두 통제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요.
-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미니스커트나 노출 있는 옷을 못 입게 해요.
- 내가 하는 일을 못 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강요해요.
-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해요.

언어적·정서적 폭력

- 욕설과 비하하는 말, 비난, 모욕,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
- 가스라이팅처럼 상대방의 정서를 억압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사 례

-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 갈등의 원인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요.
- 나의 판단이나 결정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기준대로 행동하라고 회유하거나 강요해요.
- 화가 나면 갑자기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위협해요.
- 헤어지자고 했는데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요.

신체적 폭력

-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머리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부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

사 례

-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말대꾸를 한다고 나를 폭행해요.
- 식사하는 중에도 말다툼이 시작되면 그릇을 던지거나 음식을 엎어 버려요.
-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해요.
-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꼬집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요.

성폭력·디지털성폭력

- 상대방의 성적 존엄성을 해치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 포함
- 불법촬영, 유포협박, 채팅방 성희롱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폭력도 포함

사 례

-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강요해요.
- 나와 했던 성적인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소문이 퍼졌어요.
- 같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해도 지우지 않아요.
- 제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요.
- 성관계 시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계속 요구해요.
- 자취방 또는 숙박업소에 애인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성관계 장면을 나 몰래 촬영했어요.

3 교제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통제가 심해요.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행동 등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처가 늦을수록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형태의 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대학인권센터	긴급전화 1366	경찰신고(112)
규정에 따라 학내 사건의 조사, 피해상담 및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긴급구조·보호	112신고시 1366 등 지원기관 연계협력, 협박, 감금 등 심각한 통제 상황

(물리적·성적) 폭력을 당했어요.

폭력이 발생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신체적·성적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장출동, 가해자와의 분리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지원기관으로, 연계가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 긴급 쉼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와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교제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1 피해상황 간략히 정리하기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피해 상황 및 피해 내용을 정리합니다.

2 구체적인 피해내용 및 관련자료 정리하기

- 상처나 부서진 물건, 위협·욕설하는 대화 내용 등 폭력의 흔적들을 수집하고, 발생일시와 장소를 기록합니다.
  ※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 메일, 통화 및 대화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도 확보
- 상대방의 폭력으로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이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디지털 성폭력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이란 AI기술 및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의 심각성이나 낮은 회복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은 실제 불법 영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2 디지털 성폭력 유형은?

불법촬영	•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동(화장실 이용, 성행위 등) 촬영
유포/재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단체 대화방, SNS,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행위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 사람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 •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성행위, 추가 촬영 등을 강요하는 행위
유통/소비	•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 방조 협력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 평범한 일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고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적 합성물 제작 및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 불법촬영 유포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온라인 그루밍	• 미성년 피해자에게 스스로 촬영한 사진·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 •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온라인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단톡방, SNS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3 디지털 성폭력의 대표적 사례

사례 1 불법촬영

- 화장실에서 누군가 내가 볼일을 보는 모습을 옆 칸 칸막이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도망갔어요.
- 사귀는 사람이 나 모르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서 노트북에 저장해 둔 것을 발견했어요.
-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이 내 친구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찍는 것을 봤어요.

사례 2 촬영물의 유포 및 재유포

- 헤어진 연인과 찍은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요.
- 연인에게만 보냈던 내 나체 사진을 상대방이 나의 허락 없이 자기 친구들에게 보여줬대요.
- 친구가 계속 다른 사람의 몸 사진이랑 영상을 전송해요.

사례 3 유포 협박

- 남자친구에게 연인 관계를 끝내자고 했더니 같이 찍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 채팅앱으로 사귄 사람에게 내 몸 사진을 보여줬는데 캡처해서 갑자기 내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요.

사례 4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제작·유포·소지

- 딥페이크로 합성된 나와 친구들 사진이 SNS에 유포되고 있어요.
- 남자 동기가 내 얼굴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단체채팅방에서 돌려 봤대요.
- 친구 초대로 들어간 단체채팅방에서 호기심에 지인의 얼굴이 들어있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다운로드해서 봤어요.

Q&A

Q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은 어차피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만든 영상물인데 괜찮지 않나요?

A 딥페이크 성적합성물도 실제 영상물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합성된 이미지 및 영상물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또한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디지털 성폭력이 지닌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는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법률(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을 더 이상 호기심이나 놀이로 만드는 가짜 영상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범죄로 인식해야 합니다.

Q&A

Q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내가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는데요.

A 직접 제작·유포하지 않고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물을 본다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호기심, 재미나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4년 법률(성폭력특별법) 개정하고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죄 : 징역 최대 3년 / 벌금 최대 3천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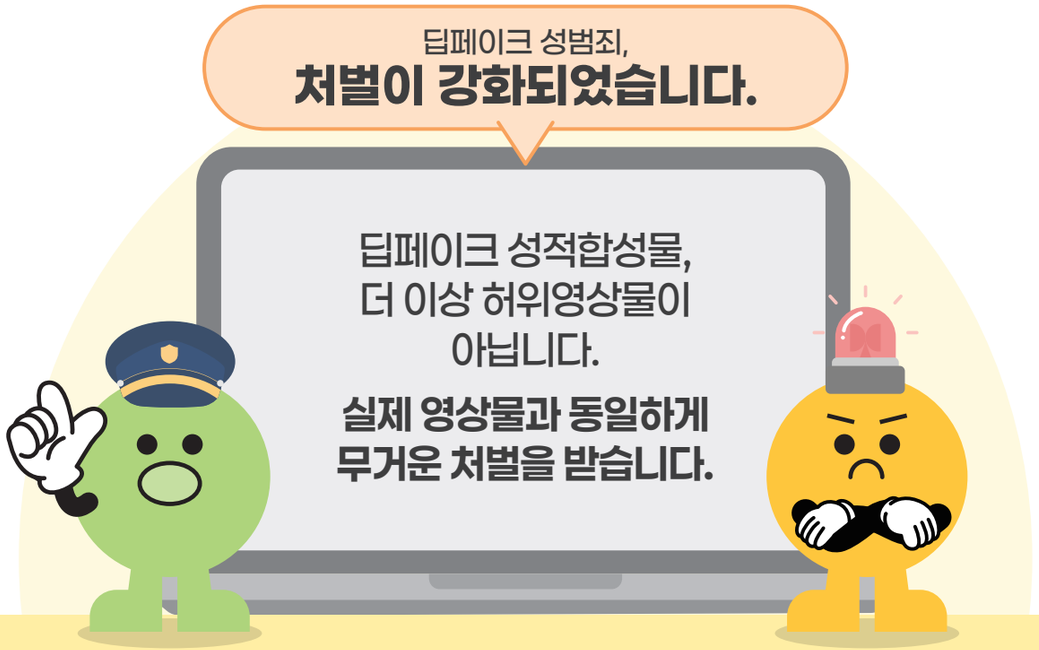

4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피해를 알게 된 즉시 신고·고소, 고충처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대응 초기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상담부터 수사·삭제 지원, 치유·회복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공공영역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피해 신고하기

112 경찰

- 경찰서 방문 신고/고소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신고 (http://ecrm.police.go.kr)

- 경찰신고시 피해영상물은 철저히 보안 유지
- 개인신상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보호자, 상담원 등)이 조사과정에 참여 가능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면 신변보호 요청 가능

1366 긴급전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 전문기관 연계 ▶ 필요한 지원체계 연결 등

1377▸3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서비스
- 365일 24시간 신고 가능
-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피해물 삭제 지원
-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 접속차단 명령

피해상담 및 삭제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5일 원스톱 피해지원 • 전화 : 02-735-8994 • 온라인 게시판 http://d4u.stop.or.kr	거주지 가까이, 어디서든 편하게 지역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전과정 지원
피해상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피해상담,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긴급삭제지원(유포후), 유포현황 모니터링(유포전/불확실)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연계지원	수사과정 모니터링, 증거작성지원, 의료·심리치유·무료법률지원 연계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 [부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정보 참조

사진, 영상파일이나 메시지 등을 절대로 삭제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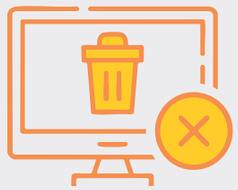

Q&A

Q 피해 영상물의 삭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유포된 피해 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지원을 진행합니다. 삭제지원은 피해 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게시된 플랫폼별 삭제를 요청하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연계 후 차단, 삭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05 스토킹

1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가족, 동거인 포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범죄의 유형은?

스토킹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접근 및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집이나 아르바이트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SNS에 댓글을 다는 등의 온라인 접근 행위
택배를 보내거나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신상정보나 위치정보나 이를 합성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배포, 게시하는 행위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 신상정보나 사진을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도 범죄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되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그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에게 서면경고,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위치추적장치 부착, 유치장 수감 등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내에서 스토킹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학교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재학 중인 대학의 상담 센터, 인권센터, 유학생 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인권센터 이외에도 '긴급전화(1366)'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스토킹 가해자는 남자이거나 연인 사이만 되는 거 아닌가요?

A

- 스토킹 범죄는 남녀 구분 없이 성립하며, 그 이유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구애를 목적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불만, 괴롭히려는 목적, 재미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즉 성별, 관계와 관련 없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 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Q&A

Q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A

-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물건을 놓고 오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SNS 프로필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의 사진을 여러 차례 설정한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CHAPTER

III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Ⅲ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1 주변인으로서 나의 역할은?

내 주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친구, 지인, 제3자의 피해를 인지했다면 다음과 같이 연대하고 지지해 줍니다.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 피해자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기
-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하기
-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보 공유하지 않기
- 사건을 흥미성이나 가십 정도로 다루지 않도록 제지하기
- 피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전문가에게 조언 구하기

2 피해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가해자를 편드는 말

- "네가 걔(가해자)에게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닐까?"
- "걔(가해자)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 "00이(가해자)가 ~라고 전해주래!"

피해자를 탓하는 말

- "별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게 굴어?"
- "너도 좋아서 같이 어울렸던 거 아냐?"
- "그런 사진 (영상)을 왜 찍었어?"
- "그러니까 사람(가해자) 조심하랬잖아"
- "다 끝난 일이잖아. 그만 잊어버려."

절망적 메시지의 말

- "이미 소문 다 퍼졌는데 너 어떡해"
- "다 퍼져서 어떻게 지우지? 완벽하게 삭제하는 건 어렵대"
- "신고해 봤자 소용없어"

잠깐!
도움을 주기 전 고려사항

피해를 입은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❶ 피해자에게 먼저 도움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❷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IV

CHAPTER

도움 요청하기

IV 도움 요청하기

1 사전 증거 확보하기

피해 증거 확보하기

피해 증거는 없애지 않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담확인사실서 및 상해진단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일·메시지 등도 저장하거나 캡처해두고 피해사실을 기록해 두도록 합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사건관련 자료를 모두 캡처하거나 기록하고,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에 필요하니 절대로 원본 파일을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확인 사실서

-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담 받았는지 필요 내용 포함
-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 발급요청

진단서, 소견서

-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치료 받기
- 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모두 가능

목격자 확인서/ 진술서

-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 문서 형태로 받을 수 없다면, 대화 내역이 담긴 메신저/ 문자메시지 캡처 제출도 가능

메일, 문자메시지, SNS 관련 내용 캡처

-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일, 문자메시지, SNS 관련 내용 일체
- 연락, 협박내용 저장 또는 캡처

관련 이미지, 영상파일

-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활용된 사진/영상 등의 원본 파일 제출

게시 등 발생 주소(URL)

- 온라인 사이트 게시로 인한 피해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 URL 정확하게 정리, 제출
-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URL을 제시하는 것은 수사 및 삭제 지원 등에 유리

그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Q&A

Q 딥페이크 피해영상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물', 또는 유포된 사이트 링크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물을 핸드폰에서 복구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경찰이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피해 신고하기

대학 인권센터에서 상담하고 조력받기

인권센터에서 상담받는다고 해서 바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해결 방안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별로 인권센터 규정에 제3자 신고가 가능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제3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는 고소와 함께 하기

사법절차 과정 중에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고소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고소를 한 피해자'에 비해 보장되는 권리가 적기 때문에 신고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 피해 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상황에 따라서 강요, 공갈 협박 또는 스토킹, 교제폭력, 명예훼손, 보복 또는 괴롭힘 등의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다면, 인권센터 및 수사기관에 피해자보호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인권센터	수사기관
임시조치(분리, 피해회복 지원 등) 등 인권센터 규정 참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

3 도움 요청하기

학교 내 (인권센터 등)

대학 내 설치된 인권센터(또는 성평등센터)에서 상담을 지원받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 인권센터는 자체 규정에 따라 학내 발생 사건의 조사·상담, 피해상담 및 정보 제공,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전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국적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비자나 학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권센터의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

- 행위자와의 분리(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업, 반, 기숙사, 좌석 등 변경 가능)
- 개인정보와 신원을 철저히 보호
- 심리 상담 서비스 및 통역 지원
- 필요 시,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기숙사 등 거주환경을 조정하는 조치 마련

※ 대학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호·지원 내용은 각 대학 인권센터에 문의

학교 밖

긴급전화 1366

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에 연락하면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의료 지원·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범죄신고 112

112로 신고하면 경찰로부터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통화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면 '통역'이라고 말하면 바로 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가 제공되며,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하면, 전화통화없이 13개 이상의 다국어 지원 및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통역지원 받을 수 있는 곳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등

한국어가 서툴러 통역이 필요할 경우, 대표적으로는 다누리콜센터(365일 24시간)를 통해 상담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는 13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3자 통화도 가능합니다.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과 긴급 지원·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도 유사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통역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통역서비스 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365일 24시간

- **활용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등 13개 언어 상담
- **지역센터**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구미, 전주 (18시 이후는 대표전화로 연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0120 | 평일 9~18시

- **활용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6개 언어 상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등 22개 언어는 요청 시 가능(통번역지원단 운영)
- **지원내용** 상담(법률상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 심리적 어려움 상담 등) + 긴급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서비스

아르바이트 성희롱·성폭력

지역별 가능 언어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500363

부록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정보

지원유형	기 관 명	연 락 처	지원 내용
경찰 신고	112	국번없이 112	• 신뢰관계자 조사과정 참여 가능 • 개인신상 철저 보호 • 신변보호요청 가능 • 통역서비스 제공
피해신고 및 상담	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 365일 24시간 상담 • 전문기관 연계 • 필요한 지원체계 연결
통역 서비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365일 24시간 상담 • 13개 언어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중앙 (대표)	02)735-8994 http://d4u.stop.or.kr	• 365일 원스톱 피해지원 • 디지털성폭력피해상담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전문기관 연계지원 (수사과정 모니터링, 의료·심리 치유·무료법률지원)
	서 울	02)815-0382	**거주지 가까이, 지역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전과정 지원 (전국 17개시도 운영)** • 디지털성폭력피해상담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법률·의료연계 등 맞춤형 지원 • 수사기관·법원 동행 •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
	부 산	051)802-2081	
	대 구	053)215-6487	
	인 천	032)517-5170	
	광 주	062)672-1355	
	대 전	042)255-0078	
	울 산	052)252-8247	
	세 종	044)866-1366	
	경 기	1544-9112	
	강 원	033)765-1366	
	충 북	043)267-3006	
	충 남	041)545-8994	
	전 북	063)717-1366	
	전 남	061)283-4510	
	경 북	054)284-0404	
	경 남	055)244-9009	
	제 주	064)744-8994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발 행 일 | 2025년 12월
발 행 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4.203.7114/7111)
편집·인쇄 | (사)대구문화콘텐츠플랫폼

※ 이 책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로 제공됩니다,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인용 발췌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교육부

<비매품>